

#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576
----------	------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16일  
 발 의 자 : 김종욱, 김광수(노원), 양준욱,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양천), 김경자(강서), 김광수(도봉),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용석(도봉), 김용석(서초), 김영한,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광상, 유동균, 유 용, 유 청, 유찬중,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창섭,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홍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허기희 의원(79명)

##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위반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역행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인용을 통한 파면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국회는 지난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탄핵소추의결에 필요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66%)를 훨씬 넘는 234명(78%)이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함.
- 같은 날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주 연속 평균 91%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압도적으로 피청구인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전면적으로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남.
-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위반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역행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인용을 통한 파면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헌법」 등
- 나. 기타사항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등

## 4. 이 송 처

- 헌법재판소

##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헌법은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담한 현실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등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자행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 그 자체였다.

특히,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은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말하였듯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고, 대통령을 믿었던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헌법수호자이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여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국정을 농단한 일대 사건으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지난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탄핵소추의결에 필요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66%)를 훨씬 넘는 234명(78%)이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주 연속 평균 91%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압도적으로 피청구인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전면적으로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로써,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이라 할지라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인용을 통한 조속한 파면결정이야말로 오히려 국가적 손실과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길이며,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위반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역행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인용을 통한 파면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모든 국민과 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1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